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문정복・김한규・윤준병

민형배 • 문금주 • 강준현

김주영 · 강유정 · 김문수

김용민 · 김영배 · 위성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 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.

영양교사는 식단 작성,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·안전·작업관리 및 검식,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·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,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 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제3항) 중 "제1항 단서의"를 "제2항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제4항) 중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 한다.

-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영양교사의 배치 등) ① 제 | 제7조(영양교사의 배치 등) ① |
| 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| |
|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| |
| 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 | |
|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 | |
| 와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제1 | |
| 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. <u>다</u> | <u><단</u> |
| 만,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| 서 삭제> 이 경우 재학 중인 |
| 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|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|
|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| 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|
| 통령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 |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. |
| <u>설></u> | |
| <u><신 설></u>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|
| |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|
| |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 |
| |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|
| | <u>으로 정한다.</u> |
| <u>②</u> (생 략) 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|
|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 | <u>④</u> <u>제2항의</u> |
| 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| |
|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 | |
| 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 | |
|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 | |

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국제자구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 ⑤ 제4항에 |
|----------|
| |
| |
| |
| <u>.</u> |